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73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서영교·백승아·임미애

박지혜・김주영・이연희

조인철 · 김병주 · 김영호

모경종 • 이성윤 • 박해철

김승원 • 이수진 • 김민석

박균택 · 정준호 · 채현일

한민수 · 안도걸 · 이광희

박선원 · 김 윤 · 복기왕

이해식 • 김 현 • 김성환

위성곤 • 박주민 • 강준현

정진욱 · 임호선 · 이훈기

민형배 · 김용만 · 전종덕

조계원 · 김남근 · 안태준

유종오 • 김윤덕 • 송재봉

황명선 · 장종태 · 권향엽

박용갑・황정아・장경태

정혜경 · 오세희 · 문대림

전진숙 · 김기표 · 이개호

이춘석 • 이재강 • 강훈식

이기헌 • 허성무 • 추미애

남인순 · 한정애 · 진선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야기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

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법률 제 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을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로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써 입은 피해를 말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 상(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말한다)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 게시 또는 상영
 -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 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 설></u>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
	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
	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함
	으로써 입은 피해를 말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	<u>2.</u> 제1호의
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	
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u>2.</u> (생 략)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u><신 설></u>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등) ① 누구든
	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
	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
	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
	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일본군위안부 피

<신 설>

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말한다)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 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 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 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 벌하지 아니한다.